KB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KB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 <u>약관</u>이 적용됩니다. <u>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교부</u>됩니다.

1 상품 개요

■ 상 품 명 : KB 퇴직연금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

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제한 없음		
계약기간	고정금리형	1개월에서 60개월(5년)이내에서 연,월,일 단위로 계약	
	변동금리형	1년(회전기간 3개월, 6개월 2종류)	
세제혜택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		
세제혜택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		

	(세금공제전, 연%)			
	구 분	계약기간		이율
		월구간	일구간	(연%)
		1개월~ 3개월 미만	28일 이상 ~ 93일 미만	1.75
		3개월~ 6개월 미만	93일 이상 ~ 183일 미만	2.05
ס ואורוח		6개월~ 9개월 미만	183일 이상 ~ 274일 미만	2.25
만기이율 (2012.05.04.기조)		9 개월 ~ 12 개월 미만	274일 이상 ~ 367일 미만	2.45
(2013.06.01 기준)	고정	12 개월 ~ 18 개월 미만	367일 이상 ~ 555일 미만	2.50
	금리형	18 개월 ~ 24 개월 미만	555일 이상 ~ 735일 미만	2.55
		24 개월~30 개월 미만	735일 이상 ~ 915일 미만	2.70
		30 개월~36 개월 미만	915일 이상 ~ 1096일 미만	2.70
		36 개월 ~60 개월 미만	1096일 이상 ~ 1830일 이하	2.75
		60 개월		2.80
	변동 1년(3개월 회전)		2.05	
	금리형 1년(6개월 회전)			2.25

- 분할인출은 만기(중도)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근로자)별로 횟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 고정금리형

사 유	최초 만기 前	만기 재예치 後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 상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제도전환 또는 가입자이전	-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경과시 :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율 - 12개월 이상 경과시 :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경과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율 - 12개월 이상 경과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명직연금 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율 - 12개월 이상 경과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율
□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		
□ 퇴직급여의 연금형태지급		
□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	용된 이율(가산금리 포함)
□ 교체에에	-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율	- 1년 미만 경과 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분할인출이율 (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 인출시 적용 이율) (세금공제전,

2011.12.19기준)

			해당하는 일 <u>반정기예금</u> 만기이율 - 1년 이상 경과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이율
	(단. 퇴직연금수수료 취득시는	경과분 시의 <u>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u> :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 변동금리형 사 유	최초 만기 前	만기 재예치 後
분할인출이율 (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 인출시 적용 이율) (세금공제전,2011.12.19 기준)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 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 양을 하는 경우 ③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와 요건을 갖춘 경우	- 회전기간 경과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회전기간 미경과분 :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만기이율	- 회전기간 경과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회전기간 미경과분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율

		- 회전기간 경과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회전기간 미경과분 (세금공제전, 연%) 에치기간 이율 15일 미만 0.1 15일 이상~ 0.3 1개월 미만 0.5 3개월 미만 0.5 3개월 이상 1.0 - 회전 기간별 적용된 이율(기	<u> </u>	
	■ 고정금리형(2011.12.19 신규분부터 적용)			
	사 유	최초 만기 前	만기 재예치 後	
중도해지이율 (세금공제전,2011.12.19 기준)	□ 계약해지 □ 타사 계약이전	-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 1년 미만 경과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u>일반정기예금</u> 만기이율 - 1년 이상 경과시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율	
	-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경과분			

ㅇ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의 <u>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u> 적용

	■ 변동금리형			
	사 유 최초 만기 前 만기 재예	치 後		
	- 회전기간 경괴분 :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율 - 회전기간 미경과분 (세금공제전, 연%) - 회전기간 미경과 (세금공제전, 연%) - 회전기간 미경과 (세금공제전, 연%) - 회전기간 미경과 (세금공제전, 연%) - 회전기간 미경3 : 최종 재예치일 15일 미만 0.1 15일 이상~ 0.3 1개월 미만 0.5 3개월 미만 0.5 3개월 미만 0.5	. 회전기간 된 예금 기분 일 당시에 예치기간에		
	-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경과분 ㅇ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의 <u>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u> 작	덕용		
	경과기간 이율	(세금공제전, 연%)		
 만기후이율	만기후1개월이내 만기이율 X 50%	이율 마기이용 X 50%		
(2011.12.19 기준)	만기후 1개월초과~3개월이내 만기이율 X 30%			
	만기후 3개월초과 0.5 - 만기이율 :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의 일반정기예금 영업점 고시이율			
	고정금리형 신규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이자지급방식	변동금리형 매 회전기간 시작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시에 해지원리금을 아래의 재예치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합니다 *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자동 재예치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			
TI = TH 0H -1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u> </u>		
자동재예치 	고정금리형 고정금리형 구분 일 단위 계좌 월(년) 단위 계좌	형 계좌		
	재예치기간 12개월 최초 가입기간과 최초 계약기간 동일 기간 동일 기			
계좌의 해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			
예금자보호 여부	이 퇴직연금정기예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 대 상 혐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도 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에 따라, 예금보 만든 예금보호 대		
	기선인권들 소파아는 나버시 금액은 모오아시 않답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588-9999) 또는 KB 국민은행홈페이 지(www.kbstar.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